

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31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4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5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▪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6. 27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원중 상수도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대규모개발사업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규모개발사업단지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3항)
-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(별표 2)
-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(별표 3)
-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다. 관련법령

- 「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태우)

- 본 조례안은 대규모개발사업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

- 대규모개발사업단지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3항)
-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(별표 2)
-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(별표 3)
-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○ 종합검토 결과

- 안 제4조제3항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¹⁾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단지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.
- [별표 2]에서는 주거시설의 세대당 평균 인구를 포항시 인구통계 연보를 참

1)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소송[2019두30140] 대법원 판결(2020. 7. 29.) 요지

: ‘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’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,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.

고하여 기존 2.4명에서 2.17명으로 조정하였고, 환경부 「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」에 따른 침투부하율(최대급수량 원단위)을 적용하여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을 정비하였고, [별표 3]은 2022년 실시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정성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.

- 침촌지구의 판례²⁾를 반영하여 부칙 제2조에 사업 승인(준공)된 대단위 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확히 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) 침촌지구(2021두58837) 대법원 판결(2022. 4. 28) 요지

: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,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.